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25호 2022. 8. 4.(목)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21호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남해군 조례 제2622호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남해군 조례 제2623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남해군 조례 제2624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박물관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남해군 조례 제2625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남해군 조례 제2626호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6
남해군 고시 제2022-109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	17
남해군 고시 제2022-110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고시 .....	21
남해군 고시 제2022-112호 남해군계획시설(상주체육시설 :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실시 계획(변경)인가 고시 .....	23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985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	27
남해군 공고 제2022-986호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	28
남해군 공고 제2022-990호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0
남해군 공고 제2022-1001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36
남해군 공고 제2022-1002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록 공고 .....	39
남해군 공고 제2022-1004호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40
남해군 공고 제2022-1028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43
남해군 공고 제2022-1034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	47
남해군 공고 제2022-1037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	49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7호 2022년 남해군 시간선택제 임기제(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50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21호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8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다음 각 호”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제1항 중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를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제6조제1항 중 “추진하는” 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으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를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 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22호

##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8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남해바래길”(이하 “바래길”이라 한다)이란 남해군”을 “이 조례에서 “남해바래길”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은”을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바래길을”로, “추진”을 “조성·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최대한 본래”를 “본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바래길”을 “남해바래길”로, “조성한다”를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성 및 관리·운영은”을 “남해바래길의 조성·관리는”으로, “주민, 관련 법인·단체, 걷기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으로”를 “주민, 관련 기관·법인·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바래길 지정)”을 “(남해바래길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남해군의”를 “군의”로, “바래길”을 “남해바래길”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바래길”을 “남해바래길”로, “법인·단체, 걷기 전문가, 행정기관”을 “기관·법인·단체, 전문가”로 한다.

② 남해바래길의 구간과 명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의 제목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을 “(사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남해바래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해바래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탐방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운영
3. 남해바래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4.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군민과 탐방객의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5. 남해바래길 탐방객 이용 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6. 이동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남해바래길 조성사업
7. 그 밖에 남해바래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사업자, 관련 기관·법인·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탐방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관광홍보물 제공
- 2. 문화관광해설사, 남해바래길 지킴이 등 안내요원 지원
- 3.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남해바래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해바래길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1. 남해바래길 행사 참가자
- 2. 이벤트 참여자 및 당첨자
- 3. 남해바래길 완보자

제6조의 제목 “(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을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바래길” 을 “남해바래길” 로 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바래길” 을 각각 “남해바래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23호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8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군”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남해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내”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군의회”를 “남해군의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24호

##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8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500미터” 를 “400미터”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25호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8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군수” 를 “남해군수” 로 한다.

제4조 중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5조 중 “2022년 12월 31일” 을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26호

##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8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남해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과 지방세정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등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등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 나. 직전년도 고지서 1매당 합계액 2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등
  - 가. 직전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 나. 직전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 1)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 2) 법인: 2천만원
    - 3) 해당 금액 이상의 유공납세자가 없을 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 가) 개인 및 단체: 5백만원
      - 나) 법인: 1천만원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지방세정 우수읍면은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납세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다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부액 및 군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만,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이후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 선정은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통보)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등
    - 가. 납세자의 날 등에 감사패 수여
    - 나. 10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 우수읍면에는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 2. 성 명 : 오정종합건설(주)
- 3.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로 00
- 4. 점용목적 : 토지 점용(임시 컨테이너 설치)
- 5. 점용위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76-1번지
- 6. 점용면적 : 36㎡
- 7. 점용기간 : 2022. 7. 19. ~ 2024. 12. 31.

남해군 고시 제2022-109호

###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9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97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역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1	16250	도근점	중부	248024.447	26.352	127°49'12.74318"	34°49'31.20595"	2022.05.30	서면 좌장리 470-2	철재	남해군정		76
2	16251	도근점	중부	248016.247	25.586	127°49'15.01543"	34°49'30.92455"	2022.05.30	서면 좌장리 1537	각인	남해군정		
3	16252	도근점	중부	247917.767	31.671	127°49'17.99982"	34°49'27.70875"	2022.05.30	서면 좌장리 252-23	철재	남해군정		
4	16253	도근점	중부	245882.158	48.272	127°50'38.88775"	34°48'21.10038"	2022.06.03	서면 서상리 243	철재	남해군정		77
5	16254	도근점	중부	245875.071	45.736	127°50'40.77417"	34°48'20.85732"	2022.06.03	서면 서상리 247-2	철재	남해군정		
6	16255	도근점	중부	245945.970	41.124	127°50'47.64674"	34°48'23.11020"	2022.06.03	서면 서상리 277-1	철재	남해군정		
7	16256	도근점	중부	245981.019	32.281	127°50'45.81385"	34°48'24.26028"	2022.06.03	서면 서상리 280-2	철재	남해군정		
8	16257	도근점	중부	246093.626	8.754	127°50'39.73512"	34°48'27.95656"	2022.06.03	서면 서상리 345	철재	남해군정		
9	13367	도근점	중부	242473.222	95.068	128°00'43.4391"	34°46'25.8724"	2022.06.03	삼동면 봉화리 산417-1	철재	남해군정		78
10	13368	도근점	중부	242484.375	95.092	128°00'44.0867"	34°46'26.22289"	2022.06.03	삼동면 봉화리 산418	철재	남해군정		
11	13369	도근점	중부	242461.252	292703.391	128°00'45.7360"	34°46'25.4649"	2022.06.03	삼동면 봉화리 2156-1	철재	남해군정		
12	13370	도근점	중부	242466.668	83.093	128°00'48.6132"	34°46'25.6167"	2022.06.03	삼동면 봉화리 산419-4	철재	남해군정		
13	13371	도근점	중부	242466.359	77.442	128°00'52.3023"	34°46'25.5760"	2022.06.03	삼동면 봉화리 2156-1	철재	남해군정		
14	13372	도근점	중부	242428.663	292916.090	128°00'54.0867"	34°46'24.3379"	2022.06.03	삼동면 봉화리 산419-6	철재	남해군정		
15	13373	도근점	중부	242480.983	293001.009	128°00'57.4466"	34°46'26.0076"	2022.06.03	삼동면 봉화리 2222	철재	남해군정		
16	18232	도근점	중부	255830.777	51.873	127°54'18.53299"	34°53'42.34629"	2022.06.10	설천면 진목리 1512-1	철재	남해군정		79
17	18233	도근점	중부	255774.123	282694.426	127°54'16.88250"	34°53'40.52019"	2022.06.10	설천면 진목리 1484	철재	남해군정		
18	18234	도근점	중부	255767.476	46.669	127°54'14.46287"	34°53'40.32251"	2022.06.10	설천면 진목리 1486	철재	남해군정		
19	10329	도근점	중부	249908.939	280526.189	127°52'49.46739"	34°50'30.84174"	2022.06.13	남해를 아산리 1373	철재	남해군정		80
20	10330	도근점	중부	249835.572	280533.922	127°52'49.74637"	34°50'28.45900"	2022.06.13	남해를 아산리 770	철재	남해군정		
21	10331	도근점	중부	249800.608	280529.015	127°52'49.54117"	34°50'27.32593"	2022.06.13	남해를 아산리 762	철재	남해군정		
22	10336	도근점	중부	249463.193	283014.888	127°52'49.25176"	34°50'15.65890"	2022.06.14	남해를 북면리 5-22	철재	남해군정		81
23	10337	도근점	중부	249534.276	282945.199	127°54'27.25176"	34°50'17.98577"	2022.06.14	남해를 남면리 152-3	철재	남해군정		
24	10338	도근점	중부	249586.106	282908.627	127°54'24.53456"	34°50'19.67820"	2022.06.14	남해를 남면리 138-4	철재	남해군정		
25	10339	도근점	중부	249656.536	283034.078	127°54'28.07579"	34°50'21.92661"	2022.06.14	남해를 북면리 5-11	철재	남해군정		
26	16394	도근점	중부	250432.824	274989.507	127°49'11.73564"	34°50'49.36342"	2022.06.20	서면 남상리 1164-14	철재	남해군정		82
27	16395	도근점	중부	250430.883	275031.751	127°49'13.39770"	34°50'49.28922"	2022.06.20	서면 남상리 1216-1	철재	남해군정		
28	16396	도근점	중부	250493.013	275023.745	127°49'13.10258"	34°50'51.30728"	2022.06.20	서면 남상리 1113	철재	남해군정		
29	15289	도근점	중부	241479.824	279469.310	127°52'05.00462"	34°45'57.64038"	2022.06.30	남면 평산리 산13-3	철재	남해군정		83
30	15290	도근점	중부	241576.595	279489.352	127°52'05.82554"	34°46'00.77473"	2022.06.30	남면 평산리 718	철재	남해군정		
31	15291	도근점	중부	241671.655	279552.204	127°52'08.32917"	34°46'03.84153"	2022.06.30	남면 평산리 산10-5	철재	남해군정		
32	16397	도근점	중부	245624.279	276660.322	14.794	127°50' 15.9157"	2022.07.04	서면 서상리 823-1	각인	남해군정		84
33	16398	도근점	중부	245583.357	276669.238	12.380	127° 50' 16.253"	2022.07.04	서면 서상리 820-2	철재	남해군정		
34	16399	도근점	중부	245475.007	276510.924	5.280	127° 50' 9.9898"	2022.07.04	서면 서상리 1170-3	철재	남해군정		
35	13405	도근점	중부	246325.934	291902.263	83.613	128°00'15.7546"	2022.07.05	삼동면 영지리 13-1	철재	남해군정		85
36	13406	도근점	중부	246306.369	291891.856	78.930	128°00'15.3375"	2022.07.05	삼동면 영지리 13-1	철재	남해군정		
37	13407	도근점	중부	246283.677	291869.838	77.419	128°00'14.4624"	2022.07.05	삼동면 영지리 산205-1	철재	남해군정		
38	16400	도근점	중부	251621.653	275610.984	100.775	127°49'36.58186"	2022.07.05	서면 노구리 1421	철재	남해군정		86
39	16401	도근점	중부	251674.708	275507.182	83.040	127°49'32.51307"	2022.07.05	서면 노구리 1421	철재	남해군정		

지역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40	16402	도근점	중부	251738.874	72.962	127°49'29.40898"	34°51'31.62446"	2022.07.05.	서면 노구리 1183-2	철재	남해군정		
41	16403	도근점	중부	251763.550	62.611	127°49'27.87828"	34°51'32.43557"	2022.07.05.	서면 노구리 1421	철재	남해군정		
42	16404	도근점	중부	251787.598	57.466	127°49'24.99516"	34°51'33.23546"	2022.07.05.	서면 노구리 1421	철재	남해군정		
43	16405	도근점	중부	251818.040	54.190	127°49'23.39312"	34°51'34.23411"	2022.07.05.	서면 노구리 1421	철재	남해군정		
44	16406	도근점	중부	251841.177	51.830	127°49'21.55665"	34°51'34.99734"	2022.07.05.	서면 노구리 1430-8	제수번호	남해군정		
45	16407	도근점	중부	251869.408	48.882	127°49'20.71233"	34°51'35.91912"	2022.07.05.	서면 노구리 1421	철재	남해군정		
46	16408	도근점	중부	251910.076	54.279	127°49'22.56582"	34°51'37.22624"	2022.07.05.	서면 노구리 1163	철재	남해군정		
47	19474	도근점	중부	252815.752	127.632	128°03'15.2032"	34°52'0.1875"	2022.07.06.	창선면 진동리 산81-1	철재	남해군정		87
48	19475	도근점	중부	252848.227	124.812	128°03'16.1698"	34°52'0.6902"	2022.07.06.	창선면 진동리 산81-1	철재	남해군정		
49	19476	도근점	중부	252831.503	119.060	128°03'17.6544"	34°52'1.2200"	2022.07.06.	창선면 진동리 산81-1	철재	남해군정		
50	19477	도근점	중부	251577.713	54.107	128°01'30.7803"	34°51'20.9077"	2022.07.06.	창선면 진동리 산38-35	철재	남해군정		
51	19478	도근점	중부	251614.148	44.316	128°01'29.0472"	34°51'22.1046"	2022.07.06.	창선면 부윤리 산38-33	철재	남해군정		
52	19479	도근점	중부	251534.562	28.165	128°01'28.0380"	34°51'19.5306"	2022.07.06.	창선면 부윤리 산47-5	철재	남해군정		
53	19480	도근점	중부	253625.388	36.903	128°00'21.7339"	34°52'27.9289"	2022.07.06.	창선면 동대리 755-1	각인	남해군정		
54	19481	도근점	중부	253483.737	15.442	128°00'24.8033"	34°52'23.3071"	2022.07.06.	창선면 동대리 746	철재	남해군정		
55	19482	도근점	중부	253533.862	14.900	128°00'27.5676"	34°52'24.9107"	2022.07.06.	창선면 동대리 산156-6	철재	남해군정		
56	19483	도근점	중부	253545.755	9.064	128°00'30.9460"	34°52'25.2685"	2022.07.06.	창선면 동대리 산156-4	철재	남해군정		
57	19484	도근점	중부	257988.446	26.593	128°01'46.3165"	34°54'48.7957"	2022.07.06.	창선면 대벽리 45-2	철재	남해군정		
58	19485	도근점	중부	258092.217	25.822	128°01'45.8950"	34°54'52.1665"	2022.07.06.	창선면 대벽리 1073	철재	남해군정		
59	19486	도근점	중부	258189.424	20.973	128°01'47.2458"	34°54'55.3092"	2022.07.06.	창선면 대벽리 1073	철재	남해군정		
60	19487	도근점	중부	258230.936	15.458	128°01'49.8983"	34°54'56.6338"	2022.07.06.	창선면 대벽리 14-2	철재	남해군정		
61	19488	도근점	중부	258246.962	15.643	128°01'52.4168"	34°54'57.1324"	2022.07.06.	창선면 대벽리 산34-2	철재	남해군정		
62	19489	도근점	중부	258289.247	9.286	128°01'53.9237"	34°54'58.4917"	2022.07.06.	창선면 대벽리 산34-4	철재	남해군정		
63	19490	도근점	중부	258349.087	2.659	128°01'57.9290"	34°55'0.3994"	2022.07.06.	창선면 대벽리 12-8	철재	남해군정		
64	16409	도근점	중부	247427.742	56.740	127°49'48.35413"	34°49'11.60162"	2022.07.06.	서면 작장리 82	철재	남해군정		88
65	16410	도근점	중부	247469.228	68.299	127°49'49.28021"	34°49'12.94149"	2022.07.06.	서면 작장리 104	철재	남해군정		
66	16411	도근점	중부	247504.538	81.479	127°49'49.93045"	34°49'14.08284"	2022.07.06.	서면 작장리 103-1	철재	남해군정		
67	16412	도근점	중부	247520.262	80.928	127°49'48.57442"	34°49'14.60233"	2022.07.06.	서면 작장리 315-1	철재	남해군정		
68	16413	도근점	중부	247564.974	88.711	127°49'47.80172"	34°49'16.05849"	2022.07.06.	서면 작장리 312-3	철재	남해군정		
69	16414	도근점	중부	247612.146	94.008	127°49'47.31588"	34°49'17.59250"	2022.07.06.	서면 작장리 312-1	철재	남해군정		
70	16415	도근점	중부	247595.466	102.783	127°49'49.00286"	34°49'17.03975"	2022.07.06.	서면 작장리 산191-1	제수번호	남해군정		
71	16416	도근점	중부	247593.240	105.663	127°49'50.29622"	34°49'16.98688"	2022.07.06.	서면 작장리 산191-1	철재	남해군정		
72	16417	도근점	중부	247595.562	108.011	127°49'56.32588"	34°49'17.01461"	2022.07.06.	서면 작장리 4-1	철재	남해군정		
73	16418	도근점	중부	247556.733	116.227	127°49'56.32588"	34°49'15.73284"	2022.07.06.	서면 작장리 산198	철재	남해군정		
74	16419	도근점	중부	247676.877	102.339	127°49'44.46007"	34°49'19.71248"	2022.07.06.	서면 작장리 산179-1	철재	남해군정		
75	16420	도근점	중부	247698.832	101.323	127°49'43.25563"	34°49'20.43312"	2022.07.06.	서면 작장리 산178-1	철재	남해군정		
76	16421	도근점	중부	247723.174	95.426	127°49'41.02709"	34°49'21.23818"	2022.07.06.	서면 작장리 산178-1	철재	남해군정		
77	16422	도근점	중부	247758.228	87.217	127°49'36.93601"	34°49'22.4348"	2022.07.06.	서면 작장리 282-1	철재	남해군정		
78	16423	도근점	중부	253030.140	183.235	127°51'18.86547"	34°52'12.76899"	2022.07.06.	서면 중현리 산30	철재	남해군정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79	16424	도근점	중부	252968.674	197.179	127°51'18.73649"	34°52'10.77538"	2022.07.06	서면 중현리 산30	철재	남해군청		89
80	16425	도근점	중부	252934.178	205.684	127°51'19.58284"	34°52'09.65005"	2022.07.06	서면 중현리 73-5	철재	남해군청		
81	16426	도근점	중부	252933.854	201.506	127°51'16.72758"	34°52'09.65963"	2022.07.06	서면 중현리 68-3	철재	남해군청		
82	11325	도근점	중부	245333.106	32.497	127°56'34.8459"	34°48'00.6702"	2022.05.31	이동면 석평리 423	철재	남해군청		특15
83	11326	도근점	중부	245209.667	31.626	127°56'34.9221"	34°47'56.6641"	2022.05.31	이동면 석평리 373-1	철재	남해군청		
84	11327	도근점	중부	245178.451	28.086	127°56'40.0453"	34°47'55.6114"	2022.05.31	이동면 석평리 446-3	철재	남해군청		
85	11328	도근점	중부	245135.806	25.145	127°56'44.0766"	34°47'54.1963"	2022.05.31	이동면 석평리 206-1	철재	남해군청		
86	10332	도근점	중부	249469.990	9.195	127°54'03.11949"	34°50'16.05886"	2022.06.13	남해읍 북변리 56-4	철재	남해군청		특16
87	10333	도근점	중부	249340.605	7.408	127°54'08.97886"	34°50'11.81699"	2022.06.13	남해읍 북변리 43-1	맨홀흙	남해군청		
88	10334	도근점	중부	249380.730	5.533	127°54'13.30509"	34°50'13.08690"	2022.06.13	남해읍 북변리 36-2	철재	남해군청		
89	10335	도근점	중부	249524.873	8.486	127°54'08.56628"	34°50'17.79939"	2022.06.13	남해읍 북변리 376-2	철재	남해군청		
90	11349	도근점	중부	241195.303	2.763	127°52'49.46739"	34°50'30.84174"	2022.06.17	이동면 신전리 1138-10	철재	남해군청		특17
91	11350	도근점	중부	241284.412	3.352	127°52'49.74637"	34°50'28.45900"	2022.06.17	이동면 신전리 1143-4	철재	남해군청		
92	11351	도근점	중부	241403.178	3.897	127°52'49.54117"	34°50'27.32593"	2022.06.17	이동면 신전리 1138-13	철재	남해군청		
93	18244	도근점	중부	255744.417	2.822	127°55'28.82103"	34°53'39.01494"	2022.07.12	설천면 진목리 19-2	철재	남해군청		특19
94	18245	도근점	중부	256027.154	2.741	127°55'25.32792"	34°53'48.21599"	2022.07.12	설천면 진목리 19-2	철재	남해군청		
95	18246	도근점	중부	256130.446	2.515	127°55'27.07884"	34°53'51.55437"	2022.07.12	설천면 진목리 776-6	철재	남해군청		
96	18247	도근점	중부	256197.594	2.642	127°55'21.31676"	34°53'53.77703"	2022.07.12	설천면 진목리 776-5	철재	남해군청		
97	18248	도근점	중부	256327.184	2.475	127°55'17.43842"	34°53'58.01151"	2022.07.12	설천면 진목리 758-1	철재	남해군청		

남해군 고시 제2022-110호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남 해 군 수

####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 대상

시설명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연장(M)	폭(M)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세 정 교	소교량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50-3 앞	11	6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소 해소	2016. 12. 16.

2. 문의처 : 남해군 재난안전과 (055-860-3294)

■ 사업 전



■ 사업 후



남해군 공고 제2022-112호

## 남해군계획시설(상주체육시설 :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1-159호(2021.10.05.)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상주체육시설)에 대해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체육진흥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7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상주체육시설: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 명칭 : 상주체육시설(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82,830㎡→96,063㎡(증13,23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도시건축과(☎055-860-3414), 체육진흥과(☎055-860-8662))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60,483	96,063					
1	상주면	상주리	1707		답	2,556	2,556	남해군				
2	상주면	상주리	1709		답	646	646	남해군				
3	상주면	상주리	1709	1	채	2,782	2,782	남해군				
4	상주면	상주리	1709	2	답	8	8	남해군				
5	상주면	상주리	1722		채	74,263	74,263	남해군				
6	상주면	상주리	1727		답	73	73	남해군				
7	상주면	상주리	1727	1	답	27	27	남해군				
8	상주면	상주리	1728		답	303	303	남해군				
9	상주면	상주리	1728	1	답	21	21	남해군				
10	상주면	상주리	1733		묘	855	855	최*조				미등기
11	상주면	상주리	1733	1	묘	163	163	최*조				미등기
12	상주면	상주리	1744	1	전	597	597	남해군				
13	상주면	상주리	1744	5	전	182	182	남해군				
14	상주면	상주리	1744	6	전	363	363	남해군				
15	상주면	상주리	1744	21	전	107	107	남해군				
16	상주면	상주리	1745	4	전	23	23	남해군				
17	상주면	상주리	1750	3	목	34	34	남해군				
18	상주면	상주리	1750	4	답	25	25	남해군				
19	상주면	상주리	1751	1	답	5	5	남해군				
20	상주면	상주리	1781	9	답	103	103	남해군				
21	상주면	상주리	1786		답	370	370	남해군				
22	상주면	상주리	1787		묘	43	43	고*득				미등기
23	상주면	상주리	1788		답	437	437	남해군				
24	상주면	상주리	1789		답	95	95	남해군				
25	상주면	상주리	1789	1	도	1,690	72	남해군				
26	상주면	상주리	1827		답	319	319	남해군				
27	상주면	상주리	1828		답	231	231	남해군				
28	상주면	상주리	1828	2	답	242	242	남해군				
29	상주면	상주리	1829		답	48	48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26) 제 725 호

2022년 8월 4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읍·면	리·동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0	상주면	상주리	1829	4	답	180	180	남해군				
31	상주면	상주리	1841		도	4,209	169	남해군				
32	상주면	상주리	1846	2	묘	70	32	남해군				
33	상주면	상주리	1847	1	도	40	40	최*옥	1267			
34	상주면	상주리	1848	1	도	42	42	김*민	1304			
35	상주면	상주리	1859		답	176	176	남해군				
36	상주면	상주리	1861		체	3,602	3,602	남해군				
37	상주면	상주리	1865	3	답	799	799	남해군				
38	상주면	상주리	1867		답	750	232	남해군				
39	상주면	상주리	1867	2	답	186	186	남해군				
40	상주면	상주리	1872		유	3,607	3,607	남해군				
41	상주면	상주리	2130	1	답	5	5	남해군				
42	상주면	상주리	2131	2	답	12	12	남해군				
43	상주면	상주리	2196		천	44,802	225	국토교통부				
44	상주면	상주리	2196	23	체	96	96	기획재정부				
45	상주면	상주리	2196	24	체	582	582	기획재정부				
46	상주면	상주리	2196	25	천	7,452	49	국토교통부				
47	상주면	상주리	2203		도	6,393	167	국토교통부				
48	상주면	상주리	산316	5	임	869	869	남해군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985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송어촌계 마을어업권 내 유어장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남 해 군 수

○ 유어장 지정 현황

지정 받는 자	지정번호	유어장명	지정 위치	지정 면적 (ha)	지정기간
금송어촌계	남해군 제00061호	금송노다지 갯벌체험장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금송어촌계 마을지선 (마을어업 198호 내)	5.1	2022. 7. 14. ~ 2023. 12. 30.

남해군 공고 제2022-986호

###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 남 해 군 수

- 1. 공 고 명 : 도로지정 공고
-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 3. 공고기간 : 2022. 7. 15. ~ 2022. 7. 30.
-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로위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남해읍 차산리 610-2	권희0	79.5m	6m	남해읍 차산리 610-2	477㎡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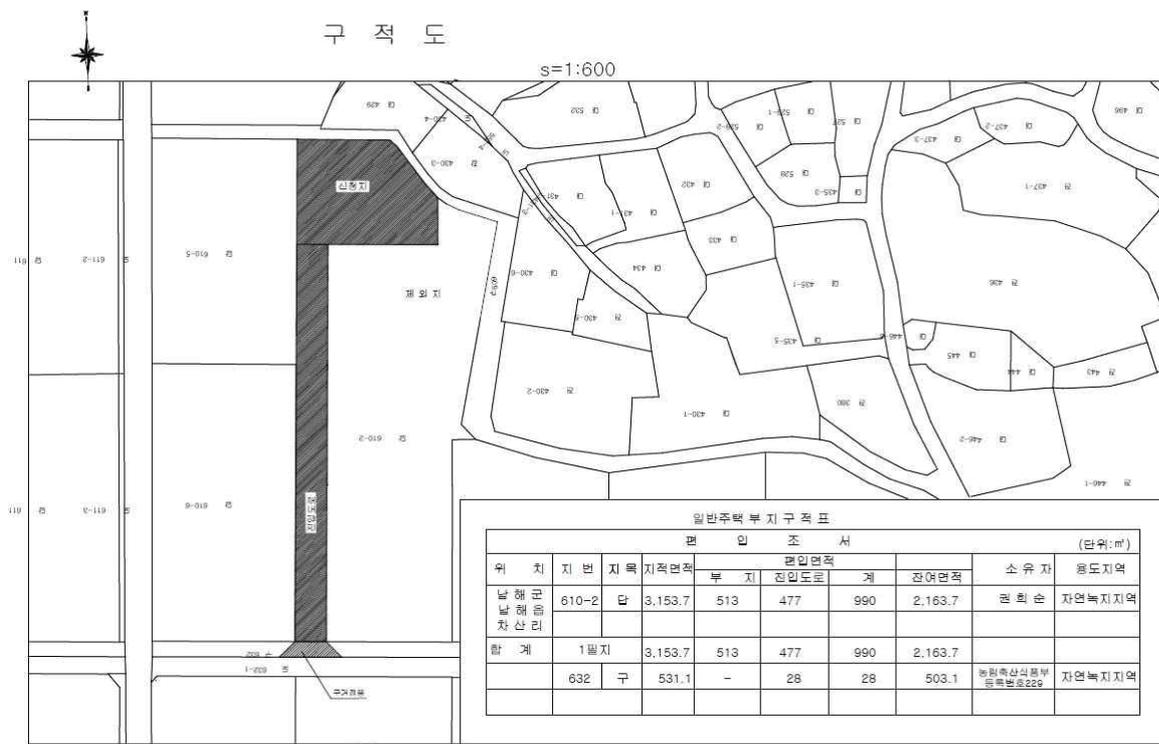
-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6. 문의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남해군청 경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055-860-3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현황 사진위성



■ 현황도



남해군 공고 제2022-990호

##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 11. 19.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라.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안 제17조 ~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2년 8월 4일까지 남해군수(참조 지역활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1) 우편: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 2) 팩스: 055-860-3706
- 3) 메일: chaehuni@korea.kr
- 4) 직접방문

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일자리창출팀(☎055-860-3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8조제1호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제8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 3.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물품 및 서비스 지원
-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필수업무 지원 담당 국장, 필수업무 지원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001호

##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하는 경우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었음.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후심의 규정(우선 보호조치)은 삭제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안 제10조)
- 다.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1)
- 마. 우선 보호조치(제17조)에 관한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는 2022. 8.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청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을 제출할 곳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아동드림팀
- 2) 연락처 : 팩스 055-860-3750, 전화 055-860-8648, 86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청년혁신과 아동드림팀(055-860-86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남해군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사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002호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 업무처리규정」 제55호 규정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관리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 남 해 군 수

-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 2. 공고기간 : 2022. 7. 20. ~ 2022. 8. 3.
-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4. 공고내용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통지(정리)내역	비 고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상가리	337	전	360	이*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등록	경계 오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상가리	337-2	전	387	고*진	- 등록사항정정시까지 지적측량 정지	

####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055-860-3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1004호

##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 2. 제정이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아동급식 단가 개선에 대한 지자체 조례 반영 권고안에 따라 생활 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및 아동급식 지원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3조제1항)
- 나.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3조제4항)
- 다. 긴급지원을 위한 사후심의 규정 신설(안 제6조)
- 라. 아동급식위원회 심의사항 명확화(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는 2022. 8.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청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을 제출할 곳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아동드림팀
- 2) 연락처 : 팩스 055-860-3750, 전화 055-860-8648, 86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청년혁신과 아동드림팀(055-860-864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1028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2. 개정취지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2022.4.21.)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2023.1.1.)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용어 변경

###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의 재산증감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제6조제2항)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항, 제3항)
- 다. 상위법령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제18조 ~ 안제32조)
  - 기존) “사용·수익허가” → 변경) “사용허가”
- 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8. ~ 2022. 8. 1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남해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860-3152~3, FAX : 055-860-37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 를 “제10조의2”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을 “(사용허가의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를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수익” 을 “사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 를 각 “사용허가” 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를 “(사용허가부의 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대장” 을 “사용허가대장”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범위)” 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범위)” 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기간에는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공고 제2022-1034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남 해 군 수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남해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2. 7. 18.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업무(계약 및 관리,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민원인,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 공고기간 : 2022. 7. 29. ~ 2022. 8. 12. (14일간)

남해군 공고 제2022-1037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남 해 군 수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남해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2. 7. 29.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 제공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보유 기간 :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 시까지(2022. 12. 예정)

남해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7호

## 2022년 남해군 시간선택제 임기제(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 남해군 시간선택제 임기제(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9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직 무 내 용
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보건소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명	2년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및 「모자보건법」 (임산부·영유아·미숙아동의 건강관리 등) 제10조 ○ 산전방문 :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 출산에 대한 산모의 준비상태 확인, 태아와의 애착확인 ○ 산후 2차 방문 : 아기 성장발달 확인, 아기 양육과 관련된 활동해보기, 지역사회 자원 안내 ○ 산후 3차 방문 : 영아 건강사정, 수유와 수면, 구강관리, 이유식, 아기와 상호 작용하기 등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연 령 : 만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결격사유>**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b>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b> (보건소 건강증진과)	<input type="checkbox"/> 자격요건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4. 채용 조건**

-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주당 35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보수수준 : 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 가. 연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에서 정한 “9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상한액의 6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등 급	임용분야	하 한 액 (2022년 보수기준)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생애초기 건강관리 간 호 사	25,831천원 (49,202천원×60%×35시간/40시간)	주 35시간

나.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개별 유선 통보)
  -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022. 8. 1.~ 2022. 8. 3.	서류전형	-	2022. 8. 5.(예정)
	면접시험	2022. 8. 8.(예정)	2022. 8. 10.(예정)

- \* 면접시험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국·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2022. 8. 3.)까지 인정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봉투」를 함께 우송
  - 반신용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응시수수료(남해군 수입증지) : 5,000원
  -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연락 바람 (055-860-3113)

####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필 기재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1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분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3)
  - 업무관련 문의(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 남해군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055-860-8717)